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변경안내 (3.16기준)

구 분	격리면제 발급기준	진단검사 (공통)
① 변이바이러스 未발생국가 (20.4.1~)	○ 중요사업목적 국민 및 외국인* - 심사부처가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부처 자체판단) * 8개 사증 타입 제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① 입국 전 PCR 검사 제출(출발전 72시간 이내 발급) * 인도적목적·공무출장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내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격리면제 효력중지, 자부담), 외국인은 입국금지 ② 입국 직후 PCR검사(1일 이내) * 공항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후 결과대기 ③ 5~7일 사이 PCR 검사 * 면제기간이 7일 이내, 인도적목적·공무출장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중지, 격리조치(자가 또는 시설)
②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20.12.23~) ※ 첨부 참고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외국인에 한해, 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 신규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불가피한 업무(증빙서류必) -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증빙서류必) * 사증타입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	
③ 신속통로 국가*		
④ 필수입국 합의국가 (독일)	○ 변이바이러스 未발생국가와 동일 ※ 변이발생유무 무관	
⑤ 교류가능 국가** (21.3.16~)		

* 신속통로국가 중 중국, 베트남, UAE,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일본, 싱가포르는 별도안내시까지 일시중단)

**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

첨부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발생(유입)국가 · 지역 현황(3.9.)

구분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아프리카·중동
총 104개국	18	16	41	29
당초, 2개국 (12.23~3.21)			영국(12.23~)	남아공(12.28~)
1차, 39개국 (1.5~3.29)	호주, 대만 , 인도, 홍콩, 파키스탄, 태국 , 싱가포르, 일본, 중국 , 베트남	캐나다, 미국, 칠레, 브라질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터키, 노르웨이, 포르투갈, 핀란드,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 독일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잠비아, UAE
2차, 5개국 (1.8~4.1)	뉴질랜드	자메이카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오만
3차, 1개국 (1.12~4.5)		페루		
4차, 9개국 (1.15~4.9)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멕시코, 에콰도르	러시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헝가리	
5차, 8개국 (1.22~3.25)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체코	감비아, 모로코, 보츠와나, 쿠웨이트
6차, 3개국 (1.26~3.29.)		트리니다드토바고	폴란드	케냐
7차, 5개국 (1.29~4.1)		세인트루시아, 파나마	불가리아, 세르비아	탄자니아
8차, 5개국 (2.2~4.5)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북마케도니아	모잠비크, 세네갈
9차, 2개국 (2.5~4.9)				말라위, 코모로
10차, 1개국 (2.9~3.22.)		우루과이		
11차, 1개국 (2.11~3.24)				가나
12차, 2개국 (2.16~3.29)			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 크로아티아	
13차, 6개국 (2.19~4.1)			몬테네그로	가봉, 기니비사우, 모리셔스, 이라크, 짐바브웨
14차, 4개국 (2.26~4.8)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나이지리아
15차, 4개국 (3.3~3.23.)			리투아니아, 조지아	리비아, 알제리
16차, 4개국 (3.5~3.25.)	인도네시아			카보베르데, 튀니지, 팔레스타인
17차, 3개국 (3.9~3.29.)			몰도바,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